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110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2021. 6. 9. 「도로명주소법, 시행령, 시행규칙」이 전부개정·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

#### 1) 제명 변경

- (변경 전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
- (변경 후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

#### 2) 용어 변경

- (변경 전) 도로명주소안내시설
- (변경 후) 주소정보시설

### 나.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(안 제2조, 제5조, 제13조)

### 다.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
### 라.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내지 제11조)

### 마. 손해배상 공제가입(안 제12조)

### 바.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1) 「도로명주소법」(법률 제17574호, 2020. 12. 8. 공포, 2021. 6. 9.시행)

2) 시·군·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1. 10. 7. ~ 10. 2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5)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11.02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도로명주소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주소정보의 사용 확대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.

1. 도로명: 모든 도로의 명칭
2. 도로명과 기초번호: 「도로명주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
3. 도로명주소: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
4.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: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·변경의 기초단위
5. 국가지점번호: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
6. 사물주소: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

**제3조(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)**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
2.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
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

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 조례」 제3조에 따른다.

**제4조(광고의 비용)**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무료
  - 가.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
  - 나.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
  - 다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유료: 제1호 외의 경우는 영 제45조4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광고비용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5조(주소정보 사용의 지원)**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
2.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(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) 등에 설치·표기하는

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

3. 관내 산하기관,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
4.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보급
5.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.

1.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
2.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구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**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8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,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9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위원회의 간사)**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
**제11조(위원회의 회의록 작성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 및 진행사항
4. 위원·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2조(손해배상 공제가입)**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

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13조(주소정보의 홍보·교육)**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민방위·예비군 교육, 각종 단체의 회의·행사·교육 등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4조(위탁)**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
2.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·재교부에 관한 사항
3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배포
5.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6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
7. 영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8.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
9.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
10.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이외에도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주소정보시설의 종류, 수량, 위치
2. 계약기간 및 금액
3.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
4.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
5. 주소정보시설의 훼손·망실에 따른 조치계획
6.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**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**제4조(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**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  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 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2021. 6. 9. 「도로명주소법, 시행령, 시행규칙」이 전부개정  
·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
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 김성수 (☎ 3153-9542)